

연구용역 관련

특정감사 실시 계획

2017. 8



I. 감사실시 개요

1 감사 목적

- 연구용역과 관련한 용역과정 및 결과물 활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, 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지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함

2 감사 중점사항

- 용역과 관련한 계약업무 처리 기준 준수 및 결과물 활용실태 등

구분	감사중점사항
용역 과정 등	▪ 계약업무 및 업체선정, 과업지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실시 ▪ 용역 발주의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
용역 결과물 활용	▪ 결과물의 공유 및 활용,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

3 감사인원 및 기간

- (감사인원) 청렴감찰팀장 및 감사역 1인으로 구성

감사인	업무분장	감사방법
○ ○ 반 장	▪ 특정감사 업무 총괄	서면 또는 실지감사
○○○ 감사역	▪ 용역 과정 및 결과물 활용 등 업무 반에 대한 점검	

- (감사기간) 계획수립 후 예비조사를 거쳐 본감사 실시

- 감사 계획 수립 및 통지 : 2017. 8. 3.
- 예비조사 실시 : 2017. 8. 3. ~ 8. 4. [2영업일]
- 본감사 실시 : 2017. 8. 7. ~ 8. 9. [3영업일]

4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

- (감사범위) 2015. 1. 1.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건

- 위 기간 중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연구용역

※ 개별 사업장의 보증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‘하자판정 및 기초금액 산정 용역’은 제외

II. 분야별 주요 예상 문제점 [예비조사 실시]

1 예비조사 개요

- ☐ (예비조사 기간) 2017. 8. 3. ~ 8. 4.
- ☐ (대상 부서) 본사부서 (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경우)
- ☐ (조사 방법) 업무담당자 면담 및 서면을 통한 자료 작성 요청

2 분야별 주요 예상 문제점

- ☐ 계약 및 업체선정 과정이 관련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
 - (내 용) 계약 규정등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절차 미준수 여부 점검
 - (접근방법) 연구용역 계약업무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 조사 등
- ☐ 당초 목적과 달리 결과물이 활용되지 않을 위험
 - (내 용) 용역 목적 달성 여부 및 결과물 활용의 적정성검토
 - (접근방법)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실태 점검

III.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

- ☐ (감사결과 보고)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상근감사위원회에 보고 (1개월 이내) 및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의거 조치
- ☐ (감사결과 통보·점검) 감사결과 지적·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, 매분기 이행실적 점검
- ☐ (감사결과 공유·공시) 감사결과를 사내전산망에 등록(GW-알림나라-자료실-감사자료실)하여 전직원에게 공유하고,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,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